유통/화장품

산업이슈 브리프 |

Check Point

- 중국 전자상거래법 입법안 통과
- 개인 판매자 등록 및 납세 시행 예정

중국 전자상거래법 통과: 개인 핀 매자 등록 및 납세 시행 예정

Analyst 오린아 _ 02 3779 0053 _ lina.oh@ebestsec.co.kr

중국 전자상거래법 입법안(电子商务法) 통과,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

-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 2018년 8월 31일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이하 전자상거래법) 입법안을 표결로 통과시킴. 이는 총 7개 장. 89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9년 1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될 예정
- 최근 중국 내 택시 앱 디디추싱(滴滴出行)으로 허위 등록한 기사들에 의해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등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의 관리 책임 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이에 상품 및 서비스를 중개하는 전자 상거래 플랫폼 기업(电子商务平台)들의 책임 및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법안의 골자

개인 판매자 등록 및 납세 시행 예정

- 이 법안에 따라 전자 상거래 플랫폼 내 개인 판매자들의 등록 의무(제10조, 농산물, 가내 수공업으로 제작한 것 판매 외에는 모두 등록), 세금 납부 등에 대한 조항이 생겼음(제11조). 또한 비우호적인 구매평 및 리뷰를 임의로 삭제했을 시에도 최대 50만 위안의 벌금을 무는 등의 내용 포함. 웨이샹, 샤오홍슈 등 개인 판매자들도 전자 상거래 범주에 들어가게 돼 금번 입법안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보도 (http://news.sina.com.cn/c/2018−08−31/doc−ihiixyeu1748546.html).
- 개인 판매자가 확산되면서 밀수품과 위조품의 판매가 확산되고 있어 정부 감독을 벗어난다는 평. C2C 전자상거래는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내고 있음. 과세 대상 조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개인 상점의 등록 규정이 없기 때문. 따라서 과세 대상이 되는 이커머스 플랫폼 내 상점은 상대적으로 불리하며 전자상거래 시장 관리에 혼란이 있다는 평
- 이는 개인이 판매하는 C2C 모델(e.g. 타오바오, 웨이샹 등)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 B2C 기반인 징동(JD.com)이나 티몰(天猫)은 일반 개인들이 등록한 상점이 거의 없기 때문

소비자 보호 강화 & 무분별한 C2C 거래 위축 전망

● 금번 법안을 통해 중국 내 위조품 및 가품 거래를 막고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강화되고 있음을 파악. 이와 더불어 개인 판매자 등록 및 납세 필요에 따라 무분별한 C2C 거래는 위축될 것으로 전망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中华人民共和国电子商务法)



자료: 全国人民代表大会,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10~12조

本法所称平台内经营者,是指通过电子商务平台销售商品或者提供服务的电子商务经营者。

第十条 电子商务经营者应当依法办理市场主体登记。但是,个人销售自产农副产品、家庭手工业产品,个人利用自己的技能从事依法无须取得许可的便民劳务活动和零星小额交易活动,以及依照法律、行政法规不需要进行登记的除外。

第十一条 电子商务经营者应当依法履行纳税义务,并依法享受税收优惠。

依照前条规定不需要办理市场主体登记的电子商务经营者在首次纳税义务发生后, 应当依照税收征收管理法律、行政法规的规定申请办理税务登记,并如实申报纳税。

第十二条 电子商务经营者从事经营活动,依法需要取得相关行政许可的,应当依 法取得行政许可。 제 10 조: 전자 상거래 사업자는 법에 따라 시장 주체(market entities)로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개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 가내 수공업 제품의 판매, 개인이 스스로의 기술을 이용해 노동을 투입한 산발적인 소규모 거래 활동은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제 11 조: 전자 상거래 운영자는 법에 따라 납세 의무를 이행하고 법에 따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전 조항(제 10 조)에 따라 등록을 할 필요가 없는 전자 상거래 사업자는 첫 납세 의무 발생 후, 세금 징수 관리 법률 및 행정 법규의 조항에 따라 세금 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이에 따라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제 12 조: 전자 상거래 사업자가 사업 활동을 영위할 시 법에 따라 관련 행정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료: 全国人民代表大会,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오린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비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

구분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 개월)	투자등급	적용기준 (향후 12 개월)	투자의견 비율	비고
Sector	시가총액 대비	Overweight (비중확대)			
(업종)	업종 비중 기준	Neutral (중립)			
	투자등급 3 단계	Underweight (비중축소)			
Company	절대수익률 기준	Buy (매수)	+20% 이상 기대	93.0%	2015 년 2월 2일부터 당사 투자등급이 기존
(기업)	투자등급 3 단계	Hold (보유)	-20% ~ +20% 기대	7.0%	4 단계 (Strong Buy / Buy / Marketperform /
		Sell (매도)	-20% 이하 기대		Sell)에서 3단계 (Buy / Hold / Sell)로 변경
		합계		100.0%	투자의견 비율은 2017. 7. 1 ~ 2018. 6. 30 당사 리서치센터의 의견공표 종목들의 맨마지막 공표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등급별 비중임 (최근 1년간 누적 기준. 분기별 갱신)